

특허법 개정안(송기헌 의원안) 검토 의견

2019. 7. 21.

‘지식연구소 공방’과 ‘커먼즈 재단’은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의안번호: 2013563, 제안일자: 2018-05-14)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1. 송기헌 의원안의 취지와 내용

- 컴퓨터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되는 경우 이를 특허권 침해로 규정하기 위해 방법 발명의 실시 개념 확대.
- 개정 취지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이 특허로 보호받지 못해 해당 발명의 경제적 가치가 떨어져 특허권자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

현 행	수 정 안
제2조(정의)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제2조(정의) 3. "실시"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나. 방법의 발명인 경우: 그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u>또는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u>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특허권자는 업으로서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한다. 다만, 그 특허권에 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전용실시권자가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는 범위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4조 (특허권의 효력)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u>특허발명의 실시가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인 경우 특허권의 효력은 그 방법의 사용이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에만 미친다.</u>

2. 특허청과 문체부 간의 합의를 넘어선 법안 - 소프트웨어 이외의 모든 방법에 확대 적용되는 문제

개정안은 소프트웨어 온라인 전송 문제를 풀자는 취지라고 하면서, 해결책으로 제시된 ‘방법 특허 확대안’은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전송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모든 방법 특허로 그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원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거론되지 않았던 분야에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될 위험이 있습니다.

적용범위의 확대에 의한 문제는 현재로서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방법 특허 확대안’의 “방법의 사용을 청약하는 행위”는 유럽에서도 실제 사례가 거의 없고 해석론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유럽의 일부 판례에서 “청약(offering)”의 범위를 물건이나 방법을 결과적으로 시장에 내놓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넓게 해석하며, 그 물건이 해외에서 만들어졌거나 해외 시장을 겨냥한 것이라도 포함된다고 넓게 해석합니다(프랑스 법원).¹⁾ 따라서 프랑스에서 개최된 국제 전시회에 등장한 광고 서류의 존재는 비록 전시 기간 동안 직접 판매는 금지되더라도 침해로 인정하였습니다.²⁾ 그리고 프랑스에서 개최된 국제 전시회에 사용된 광고 포스터가 문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³⁾ 영국 법원은 영국 특허법 제60조 제1항의 “offer”는 계약법상의 “offer”와는 다른 의미라고 하며, 전시회에서 전시하는 행위도 “offer”(“offer to dispose”의 “offer”)로 보고,⁴⁾ 카탈로그에 특허 설비의 사진을 실는 행위,⁵⁾ 특허를 침해하는 기계의 상세내용을 잠재적 구매자에게 팩스로 보내는 행위⁶⁾도 “offer”로 보는 등 매우 넓게 해석하기도 합니다.⁷⁾

유럽에서 방법의 사용을 “offering”하는 행위를 특허 침해 문제로 직접 다루는 판결은 거의 없고, 영국에서 3건 정도의 판례가 소개되어 있는데,⁸⁾ 특허된 방법을 실시할

1) TGI Paris, 25 Mar 1998: PIBD 1998 III 402.

2) TGI Paris, 19 Sep 1997: PIBD 1998 III 4; Paris, 19 Nov 1997: PIBD 1998 III 69.

3) Adrain Zahl (2016)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law and practice. LexisNexis.

4) Dunlop Tyre Co v British & Colonial Motor Co [1991] 18 RPC 313.

5) Gerber Garment Technology v Lectra Systems [1995] RPC 383.

6) Tamlass Ltd Oy v Luoyang North Glass Technology Co Ltd[2006] FSR 608.

7) 이상 영국 판결 3건은 Helen Norman (2014) Intellectual property law directions. Oxford University Press, 154면에서 인용.

수 있는 기계의 판매를 “offering”한 행위를 방법 사용의 “offering”으로 본 Tamglass v Luoyang 사건,⁹⁾ 제품 판매를 특허방법 사용의 “offering”으로 본 MMI Research v CellXion 사건,¹⁰⁾ 컴퓨터 프로그램의 제공이 방법의 사용을 “offering”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사건¹¹⁾이 있습니다.

만약 ‘방법 특허 확대안’이 국내법에 반영된 후, 프랑스 법원이나 영국 법원처럼 offering이 사진의 전시나 물건의 판매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해석·적용되면 그로 인한 영향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의약품 원료물질(API: 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을 공급하는 자가 원료물질로 생산될 수 있는 타인의 특허 의약품의 사진을 자신의 카탈로그에 실는 행위가 특허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에 관여하는 자들은 앞으로 소프트웨어에 특허가 걸려 있다면 소프트웨어를 유통하지 말아야 할 주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방법 사용의 청약’이 확대 해석될 경우 저작권법상의 이용제공권과 유사해 질 수 있고, 소프트웨어의 특허 보호와 저작권 보호의 중첩 문제가 확대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사용의 청약”을 영국 법원이나 프랑스 법원처럼 판매나 전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자유/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조건에 따라 컴퓨터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행위를 “사용의 청약”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3. 전제가 잘못된 부처간 합의

송기헌 의원안의 전제가 된 부처간 합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법상 물건으로 인정하지 않는 대신 그 대안으로 방법 특허 확대안을 추진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

8) 특허청 (2017) 주요국 특허법상 간접침해 해석기준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간접침해 제도 개정 방안 연구, 256면.

9) Tamglas Ltd Oy v. Luoyang North Glass Technology Co Ltd, [2006] F.S.R. 32.

10) MMI Research Ltd. v. Cellxion Ltd. et al., [2009] EWHC 418 (Pat).

11) Research In Motion UK Ltd. v Inpro Licensing SARL [2006] EWHC 70 (Pat). RIM v Inpro 판결은 소송 당사자의 행위가 그래서 영국 특허법에서 별도의 특허 침해 행위로 규정한 특허방법의 사용의 청약이라고 판결한 것이 아니라(따라서 판결문에는 인식 요건에 관한 아무런 설시가 없다), 특허적격성을 판단하면서 방론으로 언급한 것입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피고의 영국 특허에 대한 무효가 쟁점이었고, 이에 대한 반소로 특허권자가 모바일 전화 서비스 제공자 T-Mobile(영국에서 블랙베리 기기를 공급하는 자)에 대한 특허권 침해를 주장했는데, 법원은 컴퓨터 서버, 프록시 서버, 방법에 관한 청구항(청구항 제13항은 제외)에 대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으나, 방법 청구항을 포함하여 문제의 특허가 신규성, 진보성 결여로 무효라고 판단하여 결국 침해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지만, 이미 “컴퓨터 프로그램”은 특허법상 물건의 지위를 획득했기 때문에 이 전체가 잘못되었고, 따라서 부처간 합의는 의미가 없습니다.

근거 1)

특허청은 이미 수천 건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특허등록해 주었습니다. 2014년 특허청 심사기준 개정 후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특허정보넷 키프리스(www.kipris.or.kr) 특허 검색 기능을 이용하여 검색 조건을 “특허청구범위”, 출원일을 “20140701~20171031”로 한정하여 아래 4개의 검색어를 만족하는 등록 특허는 모두 841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등록 특허의 청구항을 확인한 결과 “프로그램” 청구항이 아니라 매체 청구항이거나 방법 또는 장치 청구항인 것도 있으나 그 수가 극히 적어서 841건 대다수를 “프로그램” 청구항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편 동일한 검색 조건과 검색어를 만족하는 전체 특허¹²⁾는 1,666건이어서 “프로그램” 청구항의 등록율은 50.5%로 나타났습니다.

-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프로그램”: 등록 63건 | 전체 126건
-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728건 | 전체 1,452건
- “매체에 기록된 컴퓨터프로그램”: 등록 1건 | 전체 1건
- “매체에 기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 49건 | 전체 87건

근거 2)

특허청은 2014년 심사기준을 개정하기 전에 전국을 돌며 개최한 ‘특허제도 통합설명회’에서 심사기준 개정 취지를 (1)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이 발명의 범주가 불명확하다는 거절이유를 삭제하고, (2) 컴퓨터 프로그램 발명은 물건 발명으로 실시 가능하게 해석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습니다.¹³⁾

12) “전체 특허”란 키프리스 상에서 특허출원의 행정상태 ‘거절’, ‘등록’, ‘소멸’, ‘무효’, ‘취하’, ‘포기’, ‘공개’를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13) 박상현 (2014) 컴퓨터 SW 관련 발명의 심사기준 개정. 특허청 2014년 특허제도 통합설명회 자료집, 35면.

근거 3)

청구항에 “매체에 저장된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기재된 발명은 방법 발명으로 해석되기 보다는 물건 발명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고, 법원도 ‘바이버 앱’ 사건에서 앱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간주하여 특허권의 간접 침해 여부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¹⁴⁾

‘바이버 앱’ 사건과 달리 ‘다음 팟 인코더’ 프로그램 사건에서는 서울고등법원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제작, 판매는 일반적으로 물건발명의 실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¹⁵⁾ 이러한 판단은 (i) 컴퓨터 프로그램은 발명의 범주가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를 청구항으로 하여 특허를 받을 수 없다는 점, (ii) 컴퓨터 프로그램은 발명의 실시를 위한 수단인 일부라는 점, (iii) 프로그램이 실행가능하게 설치된 컴퓨터를 탑재한 장치의 제조, 판매 등이 물건 발명의 실시라는 점, (iv)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특허는 “멀티미디어 데이터 병렬 처리 장치”를 특허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2014년 심사기준 개정에 의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물건 발명의 범주로 인정하였고, 그 후 등록된 “컴퓨터 프로그램” 특허가 800여건에 달하는 현시점에서는 법원도 컴퓨터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습니다.¹⁶⁾

4. 미국에서도 인정되지 않는 특허권의 과보호

14) 바이버 앱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2015. 2. 17. 선고 2013가합546931 판결)은 앱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전제하여 간접 침해 여부를 판단하였다. 다만, 법원은 특허권자의 간접침해 주장에 대하여 바이버 앱이 전용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간접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이 사건 제1, 4 내지 6항 발명은 모두 ‘이동통신 단말’에 관한 것인바, 피고의 바이버 앱이 위 발명들을 간접침해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의 바이버 앱이 ‘이동통신 단말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여야” 하지만 “바이버 앱이 ‘이동통신 단말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판결문 10, 12면)). 이 사건의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피고의 자유기술항변에 대해서만 검토하여 바이버 앱이 물건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2015. 10. 8. 선고 2015나2014387 판결).

15) 서울고등법원 2014. 4. 10. 선고 2013나5383 판결.

16) ‘다음 팟 인코더’ 사건에서 간접 침해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특허권자가 간접침해 여부를 다투었다면 전용품 요건을 판단하면서 ‘다음 팟 인코더’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전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판결문 해당 부분: “웹 사이트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의 거래행위와 간접침행의 성립여부나 통신회선과 결합하고 있는 컴퓨터의 공동 직접침해의 성립 여부에 관하여는 그러한 요건에 대하여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과 입증 없으므로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특허청은 외국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을 특허권 침해로 인정한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미국과 중국은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을 인정하지 않고, 따라서 프로그램의 온라인 유통에 특허권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허청의 2017년 연구보고서(234면)에서도 “미국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그 자체를 특정하는 청구항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Allvoice v. Microsoft 사건에서 방법이나 관련 매체(medium)로 특정되지 않고 소프트웨어로만 특정된 특허 청구항에 대해 법원은 특허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러한 점을 종합하면 2016년 12월 현재 미국에서는 프로그램 그 자체를 청구하는 청구항은 발명성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는다. 등록된 미국특허 중 일부가 프로그램 자체를 특정하는 청구항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그것들은 위 Allvoice 법리에 따라 무효될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235면).

일본 특허청이 19개국의 컴퓨터 관련 발명을 조사하여 발표한 2017년 보고서¹⁷⁾에 따르면 중국과 미국은 “컴퓨터 프로그램” 청구항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일본 기업 239개 기업 및 6개국(미국, EU, 중국, 한국, 영국, 독일) 현지 특허 전문 법률사무소 각 2곳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를 정리한 아래 내용을 보더라도 중국과 미국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온라인 전송에 대해 특허권이 미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보고서 422면: 최근 프로그램은 네트워크를 경유하여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프로그램을 직접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청구항 형식으로 보호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특히, ”프로그램“ 청구항 형식이 인정되지 않는 미국과 중국).

○ 보고서 423면: “프로그램” 청구항 형식의 중요성은 프로그램 자체가 기록된 매체를 고려하지 않고 권리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예를 들어, 프로그램의 제공 형태가 DVD 등의 패키지 판매인 경우에도, 서버로부터의 다운

17) 일본 특허청 2017년 11월 보고서(19개국의 컴퓨터 관련 발명 조사 보고서 - 各国における近年の判例等を踏まえたコンピュータソフトウェア関連発明等の特許保護の現状に関する調査研究報告書)

로드 판매인 경우에도, 해당 프로그램이 판매되고 있으면 권리 행사를 검토할 수 있다. 한편, 「프로그램」 청구항 형식이 인정되지 않는 미국에서는 간접 침해의 인정이 쉽고, 「프로그램」 청구항 형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네트워크를 통한 프로그램의 다운로드 등 프로그램 자체가 거래의 대상으로 되는 것이 당연시되고 있고, 미국과 같이 "프로그램" 청구항 형식이 인정되지 않는 국가에서 "프로그램" 청구항 형식이 인정되면 좋겠다는 희망을 자주 듣는다.

5. 특허법 개정 필요성은 특허청이 임의로 만들어낸 것

법안의 개정 취지에서 밝힌 특허법 개정 필요성 즉, 현행 특허법상 소프트웨어를 온라인으로 유통하는 행위에는 특허권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은 법원의 판단¹⁸⁾에 비추어볼 때 반드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며, 설령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특허청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것으로, 소프트웨어 산업계나 개발자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특허청은 일본 특허법이 2002년에 개정되자 이를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여러 차례 준비하였으나 관계부처 협의가 되지 않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무조정실을 통한 조정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일본식 모델은 포기하고 유럽식 모델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논의는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에는 특허권이 미치지 않아 특허 보호가 미흡하다는 특허청의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으며, 일본식 모델과 달리 컴퓨터 프로그램을 물건으로 의제하지 않고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유통을 특허권 침해 행위가 되도록 하려는 방안으로 국무조정실에서 3개 부처의 합의를 유도한 바 있는데, 당시 특허청장은 직전 국무조정실장이었습니다.

특허청이 이해당사자의 요구도 없는데 특허법 개정을 집요하게 밀어부치는 이유는 부처 자존심 세우기, 조직 이기주의 때문입니다. 특허청이 주장하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실제로 존재하는 필요성이 아니라 일본 특허법을 모방하려고 특허청이

18) SK텔레콤과 바이버(Viper) 간의 특허분쟁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음성통화 서비스, 음성 메시지 서비스, 파일 전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메신저 앱(Viper 앱)을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배포하는 행위를 SK텔레콤의 방법 특허 침해로 금지하였습니다(2015. 2. 17. 선고 2013가합546931 판결, 항소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이 판단을 기각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2015. 10. 8. 선고 2015나2014387 판결)).

인위적으로 만들어 낸 것입니다.

만약 특허청이 주장하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전송 행위에 대해 특허권을 행사할 수 없어 문제였다면, 특허청이 나서기 전에 미국이나 유럽, 일본의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자국 정부를 통해 통상 문제를 제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IBM이나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한 외국 기업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적은 없습니다. 특허청이 법 개정을 추진한 2005년 이후에 있었던 한미 FTA나 한-EU FTA 협상에서도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전송과 특허권 문제는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 FTA 이행과정에서도 상대국은 소프트웨어 특허 문제를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국내 기업들도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전송 행위에 대해 특허권이 미치지 않고 권리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를 입었다면, 국회를 통하거나 여러 경로를 통해 제도 개선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기업들을 고객으로 하는 변리사들도 같은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특허청이 법 개정을 추진한지 10년이 더 지난 지금까지 국내 기업들이나 변리사들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요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소프트웨어 산업계가 특허청의 소프트웨어 강화 정책에 찬성하는 것처럼 발표된 통계들은 모두 특허청이 편향적으로 작성한 설문조사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특허청은 자유/오픈소스 공동체의 의견은 의도적으로 듣지 않았습니다.

6.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격하는 법안

다른 기술분야와 달리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는 개발자들이 특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반도체, 의약 분야에서 연구자나 기술자들이 특허에 반대한다는 얘기가 없는 것과 비교하면 이는 매우 특이한 현상입니다.

특허법의 시각에서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곧 발명가이고 발명가의 목소리는 다른 어느 행정부처보다 특허청이 가장 잘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허청은 소프트웨어 발명가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발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특허(발명을 독점한 권리)를 보호하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으로, 특허법 제1조에도 맞지 않습니다(특허법 제1조는 ‘특허’의 보호가 아니라 ‘발명’의 보호와 이용을 제도의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허청은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다수의 특허를 출원한다는 점을 근거로 특허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특허를 출원하는 이유는 특허 공격에 대비하기 위한 방어 목적이 더 큼니다. 이는 일종의 ‘죄수의 딜레마’와 같은 상황인데, 특허청은 특허 공격을 강화함으로써 이러한 딜레마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7. 공개 소프트웨어·자유 소프트웨어 공동체의 파괴

정부가 추진하는 공개 소프트웨어의 근간은 소스 코드를 공개하고 이를 토대로 소프트웨어를 개량하는 것인데, 개정안은 소프트웨어의 온라인 전송을 특허권 침해가 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을 통해 이루어지는 소스코드 공개 행위가 특허권의 직접 위협에 놓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개 소프트웨어, 자유 소프트웨어 공동체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8. 법 체계상의 문제점

‘방법 특허 확대안’이 상정한 유럽식 모델은 특허권을 방법 사용의 청약 행위에 미치도록 하는 조문 하나로만 체계화할 수 없습니다. 소프트웨어와 관련하여 유럽식 모델은 최소한 2가지의 다른 체계와 조화되어야 합니다.

첫째, 유럽연합과 회원국 법률에서 컴퓨터 프로그램 그 자체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에 비해 컴퓨터 프로그램은 어문 저작물로서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체계는 소프트웨어에 관한 저작권을 주요 보호체계로 삼고 특허권은 예외적 보호체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¹⁹⁾

둘째, 유럽은 소프트웨어의 저작권 예외에 대해서는 특허권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19) Andrew P. Bridges (2012) Navigating the interface between utility patents and copyrights. In Neil Wilkof & Shannad Basheer (Eds.) Overlapp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Oxford University Press, 8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통합특허법원협정(UPCA) 제27조 제k항은 ‘소프트웨어 지
침’²⁰⁾ 제5조와 제6조 특히, 디컴파일 및 상호운용성에 관한 조항에서 허용하는 행
위 또는 이로부터 취득한 정보(예컨대, 디컴파일을 통해 취득한 정보)의 이용에는
특허권이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폐기된 ‘2002년 소프트웨어특허
지침(안)’ 제8조를 근간으로 하여 그 범위를 “행위” 뿐만 아니라 “정보”로 확대한
것입니다. UPCA 제27조 제(k)항은 특허법에 저작권 제한 법리를 적용함으로써 특
허권과 저작권의 중첩 보호 문제를 해결하려는 입법적 시도로 평가할 수 있는데,
‘방법 특허 확대안’은 이를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끝/

20) Directive 2009/2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legal protection of computer programs (OJEU L 111, 05/05/2009, p. 16) including any subsequent amendments.